
안전계약 특수조건

2010. 7.21 제 정
2011. 9. 1 1차개정
2013. 1. 4 2차개정
2013.11. 8 3차개정
2014. 9.12 4차개정
2020.10.01 5차개정
2021.12.29 6차개정
2022. 1.26 7차개정
2022. 6.30 8차개정
2022.11.01 9차개정
2023.11.06 10차개정
[2024.10.31 11차개정](#)

안 전 보 건 처
산업안전기획실

차 례

제1조 목 적	3
제2조 정 의	3
제3조 안전준수의무 등	4
제4조 안전보건활동	5
제5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6
제6조 산업재해보고 등	6
제7조 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	7
제8조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8
제9조 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10
제10조 인센티브	11
제11조 작업중지 등	12
제1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2
제13조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12
제14조 안전조치	12
제15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13
제16조 기타	13
【별표1】 안전 서약서 (대표자, 근로자)	14
【별표2】 안전지도서(계도서)	17
【별표3】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18
【별표4】 단기채용 근로자 관리카드	19
【별표5】 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20
【별표6】 현장 안전관리 활동	27
【별표7】 안전작업수칙	34
【별표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5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발주하여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지도서"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필수안전수칙 【별표1】 등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 【별표2】 를 말한다.
5. "안전계도서"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지적하는 서류 【별표2】 를 말한다.
6. "현장시정"이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 지도·계도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해요인 및 불안 요소로서 현장에 안내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뜻하며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8. “주관부서”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을 발주하여 시공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계약시 안전관리 능력이 확보된 적격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의 안전작업수칙 등에 대한 상시 개정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주관부서에서 검토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안전서약서 【별표1_대표자용】를 작성하여 공사시공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안전서약서 【별표1_근로자용】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일용(단기채용) 근로자의 경우 관리카드 【별표4】를 추가 작성한다.

- 제4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② 당사는 위험물질 및 부속설비를 활용하여 작업이 시작되기 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에 관한 위험성평가 및 밀폐공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6】** 을 따른다.
-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후 착공일 전일까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등)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가 착공일 전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착공일은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자동 연기되고, 착공일 연기기간의 영업일 기준 매 5일마다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간 제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착공일 연기로 인해 준공일이 경과한 경우 연기된 기간동안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3. 또한, 계약기간중 인증이 완료된 경우 재인증을 받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④-2항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사유로 안전지도서가 5회 이상 부과될 경우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지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인증 후 해당 인증업체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후심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를 당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미조치 할 경우 안전계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6. 제4조 ③-1항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용대상을 제외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중 위약벌 발생시 인증시 소요된 비용 만큼 1회에 한하여 위약벌을 감면 받을 수 있다.
 7. 배전공사 감리용역 협력회사의 경우 당사의 안내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이드북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 주관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6】을 따른다.**

③ 그 외 사항은 **당사**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 절차서에 따른다.

제7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작업수칙 등 상시 개정된 작업장 안전관리점검표를 기준으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도서 또는 안전계도서를 발행(동일 계약으로 안전계도서 3회 발행 시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안전지도서 발행 시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로 부터 안전서약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관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 발행(최대 3회)하고 제재는 위약벌만 부과한다.
1. 안전진단 및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주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대상에 등록된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당사가 부과하는 안전지도서의 위약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약 벌	비고
안전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부과한도 : 100만원 ≤ 위약벌 ≤ 1,000만원)	1건당

- ④ 감리원이 배치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에게 안전지도서(안전계도서 누적 3회건 제외)가 발행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안전지도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제7조 ②항을 제외한 관련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⑤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안전지도서 발행 시 제재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하며, ①, ②항의 절차는 이행한다.
- ⑥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지도서 발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안전지도서 이의제기 심의제도』 를 시행하여 최종 결정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당사는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① 계약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② 산업재해 발생 시 위약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약 벌	비 고
사 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부과한도 : 200만원 ≤ 위약벌 ≤ 2,000만원)	재해자 1명당 적용
부상	감전(아크화상 포함), 떨어짐	계약금액의 1.5% 부과 (부과한도 : 150만원 ≤ 위약벌 ≤ 1,500만원)	
	차량 및 중장비사고	계약금액의 1.20% 부과 (부과한도 : 120만원 ≤ 위약벌 ≤ 1,200만원)	
	기타	계약금액의 1% 부과 (부과한도 : 100만원 ≤ 위약벌 ≤ 1,000만원)	

주1) 부상은 3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을 요하는 부상시 적용

주2) 차량 및 중장비사고는 차량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및 양중기의 이동 또는 작업 중 운전자 및 근로자의 부상 발생시 적용한다.

1. 산업재해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주관 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재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제9조 제4항을 따른다.

2. 다음의 경우 위약벌을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 수령일 기준 10일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로서, 확인시점이 준공 전인 경우 제8조 ②항에서 정한 위약벌 부과기준의 1.5배액을, 준공 후인 경우 2배액을 적용한다.

나. 보고지연·누락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6조의 보고기한을 경과하여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로서, 확인시점이 준공 전인 경우 ②항에서 정한 위약벌 부과기준의 1.25배액을, 준공 후인 경우 1.5배액을 적용한다.

다.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산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계약 상대자의 경우 위약벌의 1.5배액을 적용한다.

라. 가중적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장 무거운 항목만 적용

마. 가중적용이 발생한 경우 위약벌 부과한도를 가중적용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

③ 감리원이 배치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에게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제8조 ⑦항을 제외한 관련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다만,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위하여 '근로자 재해보험 또는 근로자 재해공제'를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만큼 1회에 한하여 위약벌 금액을 감면한다. 단, 각 보험의 보상금액이 인당 5억원, 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감면 금액은 최대 위약벌 금액까지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안전서약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시 위험성 평가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개월 이내 주관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 발행(최대 3회)하고 위약벌만 부과하며,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진단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안전진단 및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주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대상에 등록된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⑧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하며, ⑤, ⑥, ⑦항의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⑩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 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된 내역이 확인 될 경우 제 8조 및 제8조의 2항의 제재기준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산업재해 발생 시 별점마일리지)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별점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향후 당사가 발주한 공사·용역의 적격심사 시 감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적용기간은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망	감전(아크화상 포함), 떨어짐	차량 및 중장비사고	기타부상	비고
별점	4.0점	1.0점	0.5점	0.1~0.3점	1명당

주1) '기타부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사업주용)」을 제출받아 기능인력 장애등급에 따라 별점을 차등 적용

장애등급	1~9등급	10~14등급	없음
별점	0.3	0.2	0.1

주2) 적격심사 당시 장애등급이 '미확정 상태'인 경우 장애등급 '없음' 적용

- ② 별점마일리지의 가중적용 대상 및 부과기준은 제8조제②항제2호를 적용한다.
- ③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와 연관 없이 발생한 부상(출퇴근 시 또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경우 등)은 제재 적용에서 제외한다. 단,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로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재에 포함한다.
- ④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 기준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별점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당사가 발주한 계약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 ① 계약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제7조 안전준수 의무위반 및 제8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 점수를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② 페널티 점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페널티 점수 부과기준		계약해지	
1. 산업재해 발생 (1명당)	사망		누계 페널티 점수 100점 이상	
	부상	감전(아크화상포함), 떨어짐, 차량 및 중장비사고		70점
		기타		30점
2. 안전지도서 발행 (1건당)	1건당 10점		20점	

- 주1) 안전지도서 발행 기준은 제 7조, 산업재해 발생시 적용기준은 제8조를 따르며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부과할 수 있다.
- 주2) 누적 페널티 점수의 유효기간은 계약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단, 장기간 공사의 경우 2년 단위로 누적하고 초과시에는 기 점수는 소멸한 후 다시 누적한다.
- 주3) 중도해지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
- 주4)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페널티 점수의 1.5배 가중 적용한다. (소수점 이하 절사)
- 주5) 송변전 건설분야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대상 :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전력관리처 토건운영공사)

③ 제9조와 관련하여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별도의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배전공사(협력회사 및 총액공사)의 경우에는 제 9조의 페널티 기준을 적용하되, 사망 사고 발생시에만 개별계약의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④ 공사수행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협력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 담당부서는 협력회사의 산안법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른 안전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공사주관부서는 사고발생 경위, 협력회사의 귀책 사유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제재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력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서로 의뢰한다. 계약해지등 에 대한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한 계약기준 심의위원회에서 계약해지등 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인센티브) ① 계약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사 주관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된 경우 향후 당사가 발주한 공사의 차기 입찰시 가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사 분야별 적격심사의 가점기준이 마련된 이후 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또한, 1,2차 사업소 주관으로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자체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본사주관으로 시행한 안전지도서 발행 및 계약에 관련된 제재사항 적용은 제외한다.

제11조(작업중지 등) ①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사 및 감리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재개 요청시 검토·승인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작업중지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6】 을 따른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6】 을 따른다.**

②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 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단계에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사·용역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입찰참가업체는 당사에서 평가서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사계약 후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전안내 후 공사수행 중 안전관리 계획등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 ④ 향후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개선조치 및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기 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장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⑤ 본 안전계약특수조건내 이행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명시된 제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계도서를 발행 할 수 있다.

【별표1】

안전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정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소속 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적극 실천한다.
3. 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며, 작업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4. 나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지급한다.
5. 나는 근로자가 작업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7. 나는 근로자의 음주·약물복용 및 질병 등 신체건강 상태등을 수시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휴식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서명 :

(인)

안전 서약서(근로자용)

본인은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재해방지책임자와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작업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 필수안전수칙(검토필요)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절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음주 금지	작업현장 내 음주 및 음주 후 현장투입·작업 금지
금연	작업장 내에는 흡연을 금지토록 하며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소화기 등 화재예방 조치 시행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지도서 발행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한국전력공사는 임직원과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환경 구현을 위해 앞장서며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임직원 및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설정하고, 실천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주기적인 이행상태 점검을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발전시킨다.
3. 전력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위험의 사전 예측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공고히 한다.
4. 위험요인의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의 관리기법에 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5. 임직원 및 모든 종사자는 안전보건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준수한다.
6.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 지원 및 정보 공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7. 이 방침을 임직원과 모든 종사자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경영을 실현 하며 신뢰와 협력을 강화한다.

2023. 10

사장 김 동 철

**한국전력공사**

【별표2】

안전지도(계도)서				[사업소 보관용]			
발행구분	안전지도서(√), 안전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발주 사업소			발행인 (지도·계도자)	소속 : 성명 :	(인)		
계약명							
장소 (주소)							
안 전 지 도 (계 도) 내 용							
○ 위반사항 (해당항목 체크)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		
3.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		
4. 기타 계약위반 사항 등					√		
○ 지도(계도) 내용 (서술)							
○ 조치요구사항 (서술)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관리부서	본부(지사)	부(팀)	

※ 안전지도·계도서 → 안전관리부서(조치요구) → 해당부서(조치,결과통보) → 안전관리부서

안전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상대자 보관용]			
발행구분	안전지도서(√), 안전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서술)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 사진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령증 서명 없이 안전지도(계도)서 발행 가능

한국전력공사

【별표3】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 계약번호 :
- 공사·용역명 :
- 공사·용역기간 : 20 ~ 20
- 시공회사명 :

결	주관부서	
	차 장	부 장
재		

(제재사실)

-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 2. 공사장소 :
- 3. 위반내용 :
 관련규정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조 ○항
- 4. 제재내용

상기 공사·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 20 년 월 일

시공회사 대표자 성명 : (인)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성 자 : 소속 성명 (인)

주) 계약담당부서는 계약해지 내용에 해당됨을 확인하며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 계약부서 담당자 : (확인)

【별표4】

일용(단기채용) 근로자 관리카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 내국 □ 외국()	
소 속 회사명		직 종		동종경력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집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채용기간	20 . . . ~ 20 . . . (일간)					
교육이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교육이수 □	교육미이수 □	
혈액형	A / B / AB / O (기타 :)					
의 료 및 재 해 정 보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명	뇌졸중(중풍)	심장병	고(저)혈압	당뇨병	간질 기타(암 등)
	표기(○)					
	○ 질병으로 인해 복용중인 약 종류 및 보관 위치(종류 : , 보관위치 :) ※ 항응고제 및 아스피린 복용여부 필수 기재					
	2. 현장에서 다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산업재해를 당하셨다면 재해 시기와 다친 부위는 어디 입니까? 재해시기 (20) / 다친 부위 ()					
	4. 사업주로부터 담당작업에 적합한 안전장구를 지급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5. 사업주로부터 담당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6. (작업종료시) 당일 현장에서 다치신 데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본인 확인 및 건설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및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안전교육이수와 산업재해발생 대비 건설근로자 의료정보 및 비상연락망 확보 등 각종 인사업무 처리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규 채용일로부터 현장 준공 후 1개월						
◎ 개인정보 수집·활용						
1.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료정보 등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수집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1) 주민등록번호, 2)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수집·활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를 하는 경우 채용 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 현장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민번호, 비상연락망 등의 정보를 미 제공 하였을 경우 법정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안전작업수칙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40조 근로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일용근로자		(서명)
				작업책임자		(서명)

【별표5】

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자 (감리)	소속/성명 (감리)	안전재난부 김안전 (인) 안전한감리 이감리 (인)	점 검 일	20 . 00. 00
점 검 대 상	사업소명	00지사	업 체 명	000
	계 약 명	0000공사(용역)		

항 목	부적합 건수	비 고 (부적합)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Golden-Rules 11 위반 포함)	건	1건 이상 위반시 안전지도서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별표1)	건	1건 이상 위반시 안전지도서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3. 기타 안전규정 위반 사항 · 안전작업수칙(산안법령 이외) · 안전계약특수조건(제18조 ⑤항)	건	안전계도서 (3건 이상 위반시 안전지도서)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4. 현장시정 ·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	건	안전 지도·계도서 외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점검결과	<input type="checkbox"/> 안전지도서 <input type="checkbox"/> 안전계도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장시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확 인 자	업 체 명	00전기	작업책임자 (연락처)	(인)* (010-0000-0000)

* 확인자가 서명을 거부할 시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 본 안전관리 점검표의 양식 및 점검항목 등은 본사주관 상시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

별표5 참고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예시)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점검 항목(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위험성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법 제36조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안전보건규칙 별표2) ▫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안전보건규칙 별표3) ▫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35조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안전보건규칙 별표4) ▫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39조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법 제37조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 유해·위험 기계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 	법 제15조 제84조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준수 	법 제140조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법 제72조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작업 등 그 외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점검 항목 (안전계약특수조건 별표 1)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안전보건 규칙 제1편 제4장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규칙 제2편 제3장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 정전선로에서의 전기작업 ▫ 정전선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안전보건 규칙 제2편 제3장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비계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 규칙 제1편 제6장 제7장
⑤ (사다리작업)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고용부 지침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안전보건 규칙 제1편 제6장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안전보건 규칙 제2편 제10장
⑧ (증장비작업) 증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 제2편 제1장
⑨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 규칙 제1편 제9장
⑩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 (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지정된 장소 외 흡연 등의 금지 	안전보건 규칙 제2편 제3장
⑪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임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법 제52조

3. 안전작업수칙 점검 항목(분야별 안전작업수칙 예시)

- 배전분야(예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작업책임자 현장상주(업무수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감시 등 현장관리 시행(작업참여 불가) 	총칙 105조
② 작업 전 안전회의 시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IS Check 시행 ▣ 작업자 개별 임무숙지, 작업전 안전회의 시행 ▣ 근로자 안전회의 참석 및 서명여부 	총칙 123조
③ 작업통보서 발행 및 휴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통보서 발행 및 보유여부 	총칙 122조
④ 공기구 사용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성 공기구 충전선로, 기기부근 사용여부 ▣ 공기구 낙하 대비 보호조치 여부 ▣ 활선차량내 기자재 전달시 심부름줄 사용 	총칙 214조
⑤ 벌목·나뭇가지 자르기 및 벌집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벌독 알레르기 검사결과 양성 (Class 4~6단계) 작업투입 금지 ▣ 수목전지시 연장형 절연톱 사용여부 	배전 213조, 221조
⑥ 작업차량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킷 안에 절연재질의 라이너 설치여부 ▣ 버킷 받침대에 거치 후 주행여부 ▣ 절연봉, 절연암 및 가완목 손상여부 ▣ 주행 전 P.T.O 분리 및 조명등 OFF ※ P.T.O : Power Take Off 	배전 411조, 413조, 총칙303 조
⑦ 맨홀 및 전력구(공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차량, 맨홀출입구부터 차량진행방향 주차 ▣ 양수기 및 발전기, 맨홀출입구 반대쪽 설치 ▣ 맨홀 개방시 교통안전장치 설치여부 ▣ 맨홀 주변내 작업, 작업자 등 정보게시여부 ▣ 깊이 1.2m 이상 출입시 사다리 등 사용여부 ▣ 맨홀 개폐와 운반시 맨홀뚜껑 개방기 사용 ▣ 작업자 충전부 접근우려시 절연고무판 설치 	배전 302조
⑧ 무정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크리트 사용여부(중성선거치 금지) ▣ 공사용개폐기 설치시 2.5m이상 (현장여건 여의치 않을시 1m이상) ▣ 도로 등 횡단시 케이블 방호여부 ▣ 케이블 연결 전 개폐기 개방여부 ▣ 기기 접지 시행여부 	배전 413조
⑨ 경고표지물 설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안내 및 현황판 설치 ▣ 라바콘/칸막이/구획로프 등 안전구간 분리 	배전 413조
⑩ 교통안내 요원 필요개소 운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개소 교통안내요원 배치 	총칙 304조
⑪ 기타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항목 이외의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 송변전분야(예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 여부 - PMIS Check 시행 여부 -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작업자 개별 임무숙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전 안전회의 및 근로자참여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여부 ▣ 작업자 개별 임무 숙지 여부 ▣ 음주, 약물복용, 심신미약자 투입 여부 	총칙 123조
② 작업통보서 발행 및 휴대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통보서 휴대 또는 현장 비치 여부 	총칙 122조
③ 작업책임자 현장상주 및 업무 수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감시 등 현장관리 시행 여부 ▣ 현장 이탈 시 업무담당자(감리원) 승인 여부 	총칙 123조
④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 시행 여부 - 작업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여부 - 공정별 핵심 Check Point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여부 ▣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 전송 여부 ▣ 전송 필수 사진(Check Point) 전송 여부 	제2~6장
⑤ 변압기 설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 고소 작업시 안전대 착용 여부 ▣ 변압기 정치 시 증장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교육 여부 ▣ 변압기 내부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여부 	송변전 213조
⑥ 축전지실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전지실 안에서 흡연 등 화기 여부 ▣ 축전지실 입구에 화기엄금 표지 부착 여부 ▣ 축전지 점검시 전기조명이나 플래시 사용 여부 ▣ 축전지실 출입시 실내 환기 및 유해가스 배출 여부 	송변전 511조
⑦ 높이 2m이상 고소작업(GIS 공사·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S용 이동식 추락방지 안전장치 등 활용 여부 ▣ 안전대를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여부 ▣ 장치별 1인 사용 여부 	송변전 513조
⑧ 무효전력보상장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상설비 개방 후 5분 이상 경과 후 재투입 여부 ▣ 조상설비 개방 후 5분 이상 경과 후 작업 시작 여부 ▣ 단락접지 후 방전 여부 	송변전 510조
⑨ 공사장 내 임시전기설비 안전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전반이 침수되지 않는 곳에 설치 여부 ▣ 분전반 금속외함 접지 여부 ▣ 분전반 시건 장치 설치 여부 ▣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30mA, 0.03sec 이하) ▣ 차량 압착에 대한 전선 보호조치 여부 ▣ 임시 전등 보호망 설치 여부 	송변전 415조
⑩ 일용직 관리 (건설일용근로자 안전 작업편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여부 ▣ 일용직 근로자 사전 투입계획서 운영 여부 ▣ 안전모 구분지급 여부 	
⑪ 출입인원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전소 등 작업구역시 출입통제 ▣ 출입문 시건상태 확인 및 통제구역 설정여부 	
⑫ 적정 자격보유자 작업시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자격을 보유한 등록·승인된 작업자 투입여부 	

- 토건분야(예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작업 전 안전회의 시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IS Check 시행 ▣ 작업자 개별 임무숙지, 작업전 안전회의 시행 ▣ 근로자 안전회의 참석 및 서명여부 	총칙 123조
② 기계·기구 위험방지 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 설치 여부(후크해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톱날 접촉 예방장치 등) ▣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여부 	건설 102조
③ 추락 위험개소 안전수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 안전고리 체결 여부 	건설 101조
④ 낙하 위험개소 안전수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하방지용 발끝막이판(10cm 이상) 설치 확인 ▣ 자재 양중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작업반경 내 위험구역통제(접근금지) 시행여부 * 줄걸이 마모·손상·노후·부식 상태 확인 * 자재 인양 시 2줄 걸이 이상 시행 여부 확인 	건설 102조
⑤ 협착 위험개소 안전수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장비, 자재에 협착 조치 설치 여부 (지게차, 굴삭기, 향타기, 배터리카 등) ▣ 건설장비 간 협착재해 예방조치 시행여부 * (공통) 신호수 지정·배치 및 신호체계 확립 * (펌프카-레미콘) 견고한 고임목(스토퍼) 설치 	건설 101조
⑥ 화재·폭발 위험개소 안전수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비산 방지조치 실시 (불티방지커버, 소화기, 인화성·가연성 자재 제거 등) ▣ 인화성·가연성 자재 인근 화기작업 금지 여부 ▣ 위험물질 보관 저장소 위치, 상태, 적정성 여부 	건설 1101조
⑦ 작업장의 청결(정리정돈)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철근, 거푸집, 비계 등), 폐기물 처리 및 정리정돈 여부 	건설 204조
⑧ 근로자 이동통로 적정 설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개소까지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 여부 (단부, 장애물, 미끄러짐 위험 방지) ▣ 건설장비 및 근로자 이동통로 구분 여부 ▣ 가설통로 경사 30도 이하 및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설치여부 	건설 201조
⑨ 공사현장 주변 안전대책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안내·현황판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설치 여부 ▣ 교통신호수 배치 및 외부인 통행안전 확보 여부 	건설 101조
⑩ 기타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항목이외의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 ICT분야(예시)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작업전 안전회의 시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IS Check 시행 ▫ 작업자 개별 임무숙지, 작업전 안전회의 시행 ▫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및 승인된 작업자 투입여부 	총칙 123조
② 작업통보서 발행 및 휴대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통보서 휴대 또는 현장 비치 여부 	총칙 122조
③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 시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시스템 전송 여부 ▫ 전송 필수 사진(Check Point) 전송 여부 	ICT 119조
④ 전원설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설비 운반시 기자재 운반수칙 준수 여부 ▫ 전원설비 점검시 시계, 반지 등 금속물 착용 금지 	ICT 제2장
⑤ OPGW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전, 접지, 안전구획 설정 및 동영상 촬영 여부 ▫ 검전시 적정 보호구 및 검전기 사용 여부 ▫ 작업개소 사할구분 표시 시행 여부 ▫ 승탑시 추락방지와이어, 안전그네식 안전대 사용 ▫ 공기구 낙하방지고리 체결 여부 ▫ 엔진풀러 및 텐서너 접지 여부 	ICT 제3-1장
⑥ 비금속 광케이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부 접근시 방호구(고무덮개 등) 설치 여부 ▫ 조가선에 매달린 작업여부(매달린 작업 불가) ▫ 낙하물 대비 지상작업자 안전한 곳에 배치 여부 ▫ 교통 위험개소에 교통신호수 등 배치 여부 	ICT 제3-2장
⑦ 보안감시설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조치 여부 ▫ 이동식 비계 이용 수칙 준수 여부 	ICT 제4장
⑧ SCADA 원격소장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운반시 적정인력 투입 여부 ▫ 덕트 개구부 보호조치 등 위해개소 안전대책 시행 	ICT 제5장
⑨ DAS 통신설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현황판, 교통안전표지판, 라바콘 적정 설치 ▫ 일용직 작업시 관리카드 및 안전모 식별스티커 부착 	ICT 제6장
⑩ AMI 통신설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U 작업시 검전 시행(조가선, 외함, 프로브 등) ▫ 모뎀 설치·철거시 안전장구(안면보호구 등) 착용 여부 	ICT 제7장
⑪ 공통 준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에 적합한 개인 안정장구 착용 여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방지 조치 여부 ▫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여부 ▫ 차량 이동구간 출입 통제 및 후진시 전담유도자 배치여부 ▫ 이동시 사다리 작업시 작업수칙 준수 여부 ▫ 밀폐공간 작업시 프로그램 준수 여부 	Golden -Rule11
⑫ 기타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항목이외의 안전작업수칙 위반 사항 	

※ 상기 예시 이외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점검표로 점검할 수 있음.

현장 안전관리 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당사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당사 주관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작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으로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당사가 제공하는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
- 유사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정보 및 수시 위험성평가 사례(해당시)
- 유사 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사례(해당시)
- 기타 유해·위험정보 등 참고자료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평가는 착공전에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시행일 또는 전년도 정기평가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당사에서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시평가는 계약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당사와 계약된 건설공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관리책임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초 선임은 계약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공단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건설업, 16시간)”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약금액 10억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가. 최근 2년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기한내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초과일로부터 1개월마다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단, 교육 수료 계획 등을 당사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위험성평가 교육관련 내용을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한다.

② 밀폐공간 작업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며, 밀폐공간 작업 도중에 해당 유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유해가스, 불활성 기체의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밀폐공간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 제 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립한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급받은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다.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라.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 설비, 보호구, 무선통신장비, 긴급구조용품 등을 직접 보유하거나 대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착공시 긴급구조 훈련을 시행한 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TBM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TBM(Tool Box Meeting) 활동 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TBM 활동은 공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기준이 별도로 수립된 경우 해당 업무기준을 따른다.

④ 작업중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사 및 감리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재개 요청시 검토·승인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요청제"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는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작업중지 요청제"를 통해 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5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시에는 위험요인의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1일의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불안전 작업의 강요, 공법 또는 작업인력 무단 변경에 의한 작업 중지요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당사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에 대하여 위험요인의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된 건에 대하여 본 안전계약특수조건 내 제7조와 개별 기준서에서 정하는 안전관련 지적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⑤ 유해·위험 기계·기구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가.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나.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 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3.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안전교육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작업수행관련 근로자 정기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확인 요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당사에서 필요시 시행하는 근로자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에 종사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⑧ 현장 안전조치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중인 작업안전 실적입력 App 등을 통해 작업 절차에 따라 각 작업을 시행하기 전 작업안전 체크리스트의 핵심 CheckPoint 조치실적 사진(GPS좌표 포함)을 전송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후에는 “작업종료” 처리를 시행하고, 작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작업취소”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준공 확인 시에는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에 실적이 1건도 등록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하여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 참고사항

상태변경 조건		작업진행상태
전문회사의 작업통보서 발행 또는 업무담당자의 작업안전실적시스템 내 수기 등록	→	시공대기
작업안전실적입력 현장용 앱을 통해 안전조치 사진을 1장 이상 전송시	→	시공 중
작업안전실적입력 현장용 앱을 통해 작업종료 전송 (안전조치 사진 전송 및 현장 작업완료 후 조치)	→	시공완료
작업안전실적입력 현장용 앱을 통해 '작업취소' 전송	→	작업취소

3. 당사와 계약한 건설공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등 영상관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별표8】** 를 수취한 후, 작업전 비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산업재해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주관 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기성)검사 요청 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조회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조회시점까지)」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당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소속 근로자의 심리 안정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트라우마 증상 등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등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심리치료 조치를 취하여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후 정산을 시행한 후 주관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중대재해 이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시 시행할 수 있다.

⑩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소셜미디어 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시행, 작업수행을 위한 기초체력여부 확인, 투입전·후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안전작업수칙[건설분야, 용역분야]

※ 안전작업수칙은 상시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

【별표8】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본 ‘개인정보 동의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작업현장 위해개소의 관리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소속회사, 성명, 개인영상 정보(얼굴 등), 연락처, 혈액형 (단, 동영상 저장시 얼굴을 흐릿한 형태로 저장하여 식별 불가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다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작업현장 위해개소 확인·관리 - 위기 상황시 응급 의료기관 안내 및 비상연락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사와 계약 중인 공사(용역 등) 준공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

관계	소속회사	성명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작업현장 동영상)
본인				

- 한국전력공사는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 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